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고 제2026-46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4월 22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4. 22. ~ 2026. 5. 5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이진성	1971.○.25.	0145250277680003923	₩18,000,000	서울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00
2	이형근	1974.○.15.	0145250277680003930	₩31,860,000	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 54번길 00
3	이경호	1964.○.15.	0145250277680004923	₩31,860,000	경북 청송군 현동면 인지1길 00
4	김재경	1969.○.23.	0145250277680004925	₩31,860,000	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00
5	(주)을세븐	176011-0058930	0145250277680004531	₩14,871,500	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8길21, 3층
6	권오태	1967.○.05.	0145250277680005155	₩8,850,000	경남 거제시 장평1로 00
7	이창훈	1985.○.09.	0145250277680005078	₩19,116,000	경북 안동시 안기1길 00
8	오명열	1973.○.20.	0145250277680005103	₩13,381,200	서울 은평구 연서로20길 00
9	김성열	1967.○.15.	0145250277680004519	₩8,850,000	경북 경주시 와동읍 구어2산단로 00
10	변지훈	1985.○.19.	0145250277680005108	₩12,744,000	경북 안동시 태화중앙로 00
11	김금순	1959.○.05.	0145250277680004906	₩31,860,000	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 번길 00
12	김교수	1960.○.08.	0145250277680004909	₩31,860,000	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1길 00
13	엄성열	1988.○.21.	0145250277680004914	₩31,860,000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노리4길 00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정승우	1962.○.01.	0145250277680005134	₩13,381,200	경북 영천시 북안면 방산길 00
15	유한회사 효중엔지니어링	131314-0000742	0145250277680005140	₩7,256,700	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45번길 33, 102호

4. 문의: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7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료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